

[사 건 명] 행심 2014-11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06.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청구인 ○○○은 인천○○초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2014. 6.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14. 6. 12.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에 의거 서면사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처분은 2014. 6. 1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4. 6. 2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개인적인 공간인 본인의 카카오토티(카스)에서 ○○○○

등으로부터 욕설과 비난, 모욕 등을 당한 학교폭력 피해자이다. 카스 상 473개 이상의 댓글로 청구인 뿐 만아니라 지인들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수치심과 모욕감이 증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까지도 그 내용이 알려질 수 있어 파급력이 상당한 것이다.

나. ○○○○은 ‘난 공유타서’, ‘찐따인거 알릴려고’ 라고 말함으로써 공유의 목적이 청구인을 왕따시키려는 것이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찐따야’, ‘눈 장애인가 ㅋㅋㅋ’, ‘존재감 없어서’, ‘장애’, ‘미친’, ‘개 웃겨’, ‘싸가지 잡년 창년이 략’ 등의 댓글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그 외 다수가 함께 청구인을 향해 집단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받았으며, 일방적인 모욕과 헐박 욕설을 당한 학교폭력의 피해자일 뿐인데, 가해학생들과 몇 마디 말을 한 것으로 청구인 역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처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사건에 대한 사정 및 경위 등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였거나 사실 확인 없이 1차 자치위원회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청구인 측이 민원을 제기하여 재차 개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측의 일방적인 의견진술에 의해서 청구인의 처분이 결정 된 것이다.

라. ‘카카오토티리 왕따’ 일명 ‘카따’ 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신체적 폭력보다 더 큰 언어적 폭력으로써, 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피해 학생에게 가해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노출이 되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이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로부터 가해행위를 당할 수 있는 점, ④ 지속

적으로 가해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점 등의 조건에 의해 피해학생을 자살로 몰고 갈 수 있는 심각한 폭력이며,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당한 학교폭력 피해사실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이다.

마. 5학년 때부터 ○○○이 청구인을 왕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의 보호자 측에서 청구인과 ○○○은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주장은 보호자의 의견일 뿐 이를 뒷받침 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매체를 49명의 학생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카따’를 가하려 한 고의성이 있고, 6~7명의 가해학생이 1시간 이상 473개 이상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한 학생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여, 일방적인 학교폭력을 당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가해학생으로서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의 동생 □□□이 ○○○에게 친구 신청 후에 삭제하고, 다시 청구인이 ○○○에게 친구 신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건의 초기 원인은 청구인에게 있었다.

나. 사안 해결에 필요한 증거로는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카스 캡처 자료가 대부분이었고 그마저도 많은 내용이 삭제된 상태여서 학생들의 진술에 의거 사실 조사를 했으며, 모든 학생들이 청구인 역시 욕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의 경우 청구인이 ‘싸가지 잡년 창년’ (창녀를 ‘년’으로 더 심하게 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창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등 심

적으로 힘들어 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다. 2014. 5.20. 개최한 1차 공동 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에 결격 사유(학부모 과반수 미달)를 발견하였고, 이러한 하자로 2014. 6.10. 2차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1차 공동 자치위원회가 부실하다는 청구인의 민원 때문에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며, 또한 자치위원회에서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에게 시간제한 없이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의견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5학년 당시 담임교사의 의견서에서 5학년 1학기에는 청구인과 ◎◎◎ 등 같은 반 교우 사이에 서로 오해, 갈등, 상처 등이 있었으나, 2학기 들어서 그러한 갈등을 풀고 서로 나쁜 감정이 없는 상태로 잘 지내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것으로 보아 5학년 때 부터 지속적으로 ◎◎◎이 청구인을 왕따시키려고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마. 이 사건은 카스 친구신청과 삭제 중에 발생한 오해로 비롯되어 ◎◎◎이 화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을 왕따시키기 위한 고의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청구인도 ◎◎◎ 등에게 카스 상 서로 욕설을 주고 받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조치 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이 2014. 5. 4. ○○○에게 카스상에서 친구신청을 하였고, ○○○이 청구인에게 친구신청을 한 이유를 묻자, 청구인은 ○○○에게 “알빠 없으니까 꺼지라”라고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청구인이 2014. 5. 4. ○○○ 등과의 카스댓글에서 ○○○ 등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

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오히려 ○○○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일 뿐인데, 가해학생들의 심각한 모욕에 대하여 몇 마디 말을 하였고, 이는 자기방어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기에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청구인이 카스상에서 ○○○ 등에게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글을 기재한 것 자체가 학교폭력의 하나인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고, 청구인이 ○○○ 등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기재한 것 자체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6.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의 보호자들의 일방적인 의견진술에 의하여 결정된 것인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에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교폭력대책회의록과 청구인 부의 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보면, 청구인 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시간제한없이 청구인의 입장을 진술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해학생의 진술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은 이 사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경한 조치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행동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적절한 처분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 등도 가해학생으로 오히려 청구인보다 사건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서면사과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심리와 판단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한다면 그 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만 판단할 뿐, ○○○의 가해행위로 인한 처분과 그 적정성에 대하여는 판단할 권한이 없고, 가사 ○○○의 청구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서면사과'보다 중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